

김웅 / 5월+6월 / 실전 GS / 8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1737	19	12.5	20	10	61.5	1	1.56%	64
543237	17	11.5	21	12	61.5	1	1.56%	
541754	15	11	21	12	59	3	4.69%	
529059	14.5	11	21	12.5	59	3	4.69%	
541168	19.5	11.5	19.5	8.5	59	3	4.69%	
543203	17	13	19.5	8	57.5	6	9.38%	
543354	18	12	19.5	8	57.5	6	9.38%	
541759	17.5	12.5	16.5	10.5	57	8	12.50%	
541765	19.5	9.5	19	9	57	8	12.50%	
541811	15	12	20.5	9	56.5	10	15.63%	
535461	15.5	12.5	19.5	9	56.5	10	15.63%	
543730	16.5	12.5	18	9.5	56.5	10	15.63%	
544338	17.5	11.5	20.5	7	56.5	10	15.63%	
535211	19	11	17.5	8.5	56	14	21.88%	
543230	17	10.5	20	8	55.5	15	23.44%	
544070	15.5	13	18.5	8.5	55.5	15	23.44%	
544096	16.5	12	19.5	7.5	55.5	15	23.44%	
541773	17	10.5	19	8.5	55	18	28.13%	
543632	17	11.5	19	7.5	55	18	28.13%	
544442	13.5	12.5	19	10	55	18	28.13%	
535412	15.5	10.5	18.5	9.5	54	21	32.81%	
541160	17.5	11	16.5	9	54	21	32.81%	
543942	15	10.5	19	9.5	54	21	32.81%	
544652	15	10	20.5	8.5	54	21	32.81%	
544803	16	10.5	19	8.5	54	21	32.81%	
528985	17.5	11	17.5	7.5	53.5	26	40.63%	
541957	16.5	11	20	6	53.5	26	40.63%	
543225	15.5	11.5	18.5	8	53.5	26	40.63%	
543759	17	11	18	7.5	53.5	26	40.63%	
541743	16	10.5	18	8.5	53	30	46.88%	
543311	17.5	10.5	16	9	53	30	46.88%	
543187	16.5	10.5	18	7.5	52.5	32	50.00%	
542141	17.5	10.5	17.5	6.5	52	33	51.56%	
544413	13	11.5	18.5	9	52	33	51.56%	
544033	16.5	10.5	17.5	7.5	52	33	51.56%	
544036	14.5	11	18.5	8	52	33	51.56%	
541910	15.5	10	18	8	51.5	37	57.81%	
543296	15	9.5	18	9	51.5	37	57.81%	
541727	15	11	16.5	8.5	51	39	60.94%	
542859	16.5	10	17	7.5	51	39	60.94%	
542865	16	10	17.5	7	50.5	41	64.06%	
542868	15	10	17	8.5	50.5	41	64.06%	
535329	18	8.5	16.5	7.5	50.5	41	64.06%	
543259	13	11	19	7.5	50.5	41	64.06%	
543401	15	9.5	19	7	50.5	41	64.06%	
544100	14	10.5	17.5	8.5	50.5	41	64.06%	
544398	13.5	10.5	18	8.5	50.5	41	64.06%	
541841	14	11	18	6.5	49.5	48	75.00%	
542761	16	10	16.5	7	49.5	48	75.00%	
544723	14	11	16.5	7.5	49	50	78.13%	
542858	14	9	18	7.5	48.5	51	79.69%	
543252	13	9.5	17	9	48.5	51	79.69%	
535310	15	8	16	8	47	53	82.81%	
544428	14	10	15.5	7.5	47	53	82.81%	

537426	15.5	9.5	14.5	7	46.5	55	85.94%
541798	14.5	9.5	13.5	8	45.5	56	87.50%
536108	15.5	8.5	14.5	6.5	45	57	89.06%
543210	13.5	7	16.5	7.5	44.5	58	90.63%
543977	13.5	11	14	5.5	44	59	92.19%
543270	16.5	8	12.5	6.5	43.5	60	93.75%
542691	16.5	6.5	15	5	43	61	95.31%
545216	13.5	9	13	7.5	43	61	95.31%
544023	10	6.5	14	7	37.5	63	98.44%
542772	16	5.5	0	0	21.5	64	100.00%

<p style="text-align: center;"><b>김웅/5월/실전GS/8회/1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이의신청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설문들로 구성된 문제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심사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물어보는 설문이 있습니다. 화상의 물품류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어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2) 설문 2</p> <p>이의신청 이유 미기재와 증거자료 미제출의 경우 조치로서 보정을 작성하는 설문이었습니다. 甲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으로서 각하결정을 작성하신 경우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10점이라는 배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론으로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하여 작성하신 경우 더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p> <p><b>3. 소결</b></p> <p>3개의 설문 모두 조문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누락한 조문이나 내용의 경우 관련 파트를 학습해 주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b>김웅/5월/실전GS/8회/2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부품과 완성품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논점으로 구성된 문제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법적 관계의 경우 답안에 없더라도 타당하다면 점수를 드렸습니다. 부품이 전용품에 해당한다면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신 경우에도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1</p> <p>분해 또는 파괴해야 볼 수 있는 경우의 판례를 누락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자인이 타물품의 내부에 위치할 경우 위 판례가 논점이 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 주세요.</p> <p>(3) 설문 2-2</p> <p>해당 판례와 함께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b>3. 소결</b></p> <p>부품과 완성품과 같이 다들 잘 학습하고 계신 논점의 경우 대부분 작성하는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목차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시거나 키워드를 강조함으로써 다른 답안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p>	

<b>김웅/5월/실전GS/8회/3번</b>	<b>채점자</b>
	<b>윤영우</b>

**1. 전반적인 총평**

비교적 무난한 설문들로 구성되어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제34조 4호의 의의, 요건, 흠결 시 효과 등을 작성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답안에는 없더라도 타당한 내용의 경우 점수를 드렸습니다.

**(2) 설문 2**

설문에서 요구하는 두 판례를 키워드를 포함하여 잘 작성하셨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를 일반론으로 작성하신 경우에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설문 3**

물품의 동일 여부 판단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간단하게라도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3. 소결**

대부분 숙지하고 있을 판례 기반의 문제로,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4문까지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시간 관리에 유의해 주세요.

<p style="text-align: center;"><b>김웅/5월/실전GS/8회/4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부동산과 부동산의 인테리어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논점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물품의 성립요건으로서 동산성에 대해 작성하는 설문이었습니다. 한증막과 방갈로의 물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복 생산성, 운반 가능성, 동산성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셨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2) 설문 2</p> <p>부동산의 실내 장식이 보호될 수 없는 이유로서 시각성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작성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의 실내 장식이라도 내부에 들어가 디자인을 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시각성을 근거로 작성하신 경우 점수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p> <p><b>3. 소결</b></p> <p>드디어 8회차의 실전 GS가 끝이 났습니다. 4주 동안 주말에 나와서 GS 답안 작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p> <p>약 일주일 정도는 5월 한 달 동안 작성한 GS를 다시 풀이하고 단권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시험까지 2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열심히 달리셔서 꼭 좋은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p>	

<문제 1>

I. 설명(1)

1. 이의신청 제도 취- 법 제 68조  
특허권 출원심사청구 후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정  
에 대해, 출원심사청구 후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정  
청장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 취지

특허심사청구 후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정  
에 대해, 출원심사청구 후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정  
청장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3. 법

(1) 특허법 제 68조

특허청의 심사결정  
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 특허법 제 68조

특허청의 심사결정 후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정  
청장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정 후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정  
청장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3) 특허법 제 68조

① 특허청의 심사결정 후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정 후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정  
청장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②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정 후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정  
청장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4. 출원심사청구 후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정

(1) 특허법 제 68조 제 2항

	각각의 출원심사 청구권, 각각의 출원심사 청구권 중 권리만 심사하여 출원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출원심사 청구 대상 - 1회 제 1항 각각의 출원심사청구 출원할 수 있는 출원권 제 1. 2. 3. 5. 9. 11. 19항에 한정한다
(3)	이러한 신청의 대상 이러한 신청은 출원심사청구 출원권 중 강화를 위한 제 2항, 출원심사청구 출원권 가능하다.
5.	신청의 경우
(1)	이러한 신청 대상 범위 - 2항 대상은 출원권 제 1항에 규정된, '출원' 출원 청구 대상임으로, 이러한 신청이 불가능하다
(2)	이러한 신청 절차 출원심사청구 출원권 각각의 출원권 각각에 대해 이러한 신청 한 번, '출원심사' 하거나 한다.
Ⅱ 출원(2)	
(1)	이러한 신청의 경우
(1)	객체적 권리 각각의 출원권 각각에 대한 출원권 각각에 제 2항 '출원심사' 출원권 각각에, 이러한 신청이 가능하다.
(2)	주체적 권리



	이러한 신청 누락의 항 가능하며, 무로 기러신청이 가능 하다.
(3) 시거적 5년	2025. 5. 2에 <u>출원</u> 후, 2025. 5. 8 <u>특정권</u> 권 후 3 개월 이내인 2025. 8. 8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u>시거적 5</u> <u>년</u> 안된다.
2. 기러 및 증거 거제	
(1) 기러신청서 거제 사항 - <u>5차 제 682 조항</u>	기러 신청인은 ① 신청인 신청. 권 ② 대리인 신청. 권 ③ <u>특정</u> 대리인 편서 ④ 기러신청서 <u>작성</u> ⑤ 기러 및 증거 편서를 하며 기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거 제하여야 한다.
(2) 기러 및 증거 보정 - <u>5차 제 692</u>	기러 신청인은 <u>특정 심사특정</u> 기러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러신청서에 적은 기러.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3) 미거제시 취급 - <u>5차 제 132 조항</u>	심사관은 기러 신청인이 기러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에는 <u>결정</u> 으로 기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3. 무로 권리	무로 기러신청서를 2025. 8. 8에 제출하였지만 기러. 증거 를 거제하지 않은 바, 2025. 8. 15 날이면 <u>각권</u> 30일 이 지남지 않았으므로 <u>제 692조</u> 의 <u>신청</u> 이 가능하다.



(2) 이의 신청 기각 결정 - 이의 제 13조 5항  
 심사관 합의에는 이의 신청이 기각 되거나 기각될 때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사안제 정

(1) 직권 심사 기각  
 무는 증거 기록 바탕으로 증거 채택이나 기각하여 사실  
 성 여부를 주장하나, 심사관 합의할 청각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2) 기판 기각 통지  
 심사관 합의할 청각 비용이 생기게 되거나 직권 심리하는  
 경우, 무나 2에게 기간을 정하여 기판 기각  
 주어야 한다.

(3) 이의 신청 결과  
 심사관 합의가 출원 권 증거 채택 기준부터 쉽게 청각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다각적 증거 취조 결정' 이  
 내려 질 것이다. <끝>

<문제 2>

I. 설명 (1)

4. 특허라 단행하여 법적 강제

(1) 심사 판단



① 특허권은 특정 산업은 가능 초과 상하여 배  
사 특허지만, ② 특허의 구상이 산업에 가까 한 경  
우 특허 특이 될 수 있다.

(2) 신기술

① 산업에 중요 한 특의 중이므로, 특은 신기술  
기지만 ② 특 중 후 산업 출 현 시는 신기술  
기가 아니다.

(3) 창작 비평

특 중 후 산업 출 현 시, 이 창작 비평 판에  
활 용 가 능 하 나, 합 계 행 가 능 한 경 우 기 만 기 반 이 다.

(4) 선행 주

① 특 나 산업은 배 사 출 현 이므로, 선행 주 기 반 이  
아 니 라 ② 특 구 상이 산업에 가 까 한  
경 우 선행 주 기 반 이 다.

(5) 특 선행 주

① 특 출 현 후 산업 출 현 시, 특 선행 주 기  
반 이 아 니 다, ② 산업 출 현 후 특 출 현 시, 특  
이 산업에 중요 한 경 우 특 선행 주  
의 기 반 이 다.

2. 침해 여 부

(1) 특 실 시 한 - 법 제 92

특 실 시 한 특 실 시 한 경 우 특 실 시 한

키를 제공한다.

(2) 휴대 기기 코드

- ① 인증된 사용자만이 존재 ② 보안을 내기 실시 ③ 일
- 오래 실시 ④ 무제한 전화이 없는 것 ⑤ 저렴한
- 사이가 없는 것 ⑥ 키보드가 가능 것

(3) 보안을 내기 실시하기

그이 실시하는 차량용 배터리 B가 배터리에 후의 부품 A  
 라 특정한 부품이 포함된 바, 차량용 배터리 B가 제작  
 판매는 곧 A가 특정한 부품이 제작. 판매이므로 보안  
 키 내의 실시이다.

(4) 결론 - 휴대

그는 부품 A가 특정한 부품은 제작. 판매하며, 이-3서  
 실시하고 실 정당한 키를 없고, 무는 그에 해  
 주장이 가능하다

II 결론 2-1)

1. 저작권이 권리 - 법 제 23 조

저작권이란 문헌의 형상. 모양. 색채. 이를 표현한  
 것으로써 '신규를 통하여' 감정를 일키게 하는 것  
 의아하다.

2. 저작권

(1) 권리. 권리





35

II. 권리 (22)

1. 저작권 권리 - (저작권법 제 22 조)

저작권이란, 저작물의 형상, 모양, 색채, 이를 표현한  
것은 시각을 통하여 이미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2. 복작성

(1) 저작 복제

저작물은 산업발전의 이익을 증진 목적으로 하는 바,  
관련한 복작성 권리는 복제 불가능, 복제 가능  
권리야 복제 가능하다.

(2) 저작물의 권리 - 복제권

저작물, 복작성 관련 구체적인 권리 등을 의미한다.

3. 복작성

(1) 저작

저작물, 저작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구성요건, 복제 등 저작물  
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복제의 권리 - 복제권

저작물은 저작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 하며, 복제권  
영역 역시 전환가능성을 가려야 하며, 이는 실제 거  
계에서 전환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전환의 가능  
성만 있다면 된다.

4. 저작물의 타당성 - 타당



제품 A는 특정 개체 대상이 작고, 전환 가능은 작거나 작  
 나, 배터리 B나 기기는 전환될 수 있는 큰 개체  
 배터리 시스템 개체로 기록이 전혀 없다면, 물론성  
 인정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더 구체적 타당하게, 이  
 대상은 개체될 것이다. <끝>

<문제-3>

6.5

1. 문제(1)

(1) 개 342 42

(1) 개

제품의 기능이 변화하는데 불가능한 영상만으로 된 개체  
 은 등록 불가능하다.

(2) 개

제품의 기능이 관련된 특정 배터리를 특히나 성능시간으로  
 보충되어야 하는 바, 마찬가지로 개체가 새겨진 화면 경쟁  
 에서 개체를 갖는 형상을 특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되기 때문이다

2. 기능적 형상의 종류

(1) 필연적 형상

제품의 기능이 발휘되는 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형상  
 을 나타내며, 반드시 해당 형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을 귀한다.

(2) 독립적인 형상

특정 관상들 갖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갖는 것이  
를 귀하여, 본래의 기능이 다른 특정한 것이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대상

(1) 전체적 판단

영양분 불충분한 영양 성분으로 된 약제인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부 성분이 기능적이라고 하는 전체 성분이 기  
능성을 갖는지 판단 하기가 된다.

(2) 모양, 색채가 포함된 경우

기능적 성상의 모양, 색채가 포함된다, 기능적 성상  
에서 발췌된 것이 해당한다.

4. 시적 기준

제 34조 3항과 달리 중립적 기준이 적용되며, 특정  
면적 표정상을 기준으로 한다.

5. 귀반시 취급

① 심사청구 출제된 것이 거절된 경우: 실용신안사건, 무효사  
건  
② 일부 심사청구 출제된 것이 거절된 경우: 실용신안  
사건, 기거선정사건, 무효사건이다.

6.5

II 1회 (2)

1.	각각의 심사판단 기준
(1)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각의 심사판단은 동일. 심사 종류 간에만 판단하여</li> <li>② 시각을 통한 심의가치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li> </ul>
(2)	원칙
	<p>각각의 기준을 분리하여 관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이한 심의가치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하고, 세부적인 점이 다른 차이가 선택적으로 전체적 심의가치 심사하면 심사 각각이다.</p>
2	기능적 형상의 취급
(1)	필연적 형상 - 원칙
	<p>회상 형상이 물품의 기능을 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필연적 형상의 경우 중점을 갖게 보아야 하며, 이러한 형상이 심사하는 사정만으로 충분히 양각각각이 심사하라고 단정 불가하다.</p>
(2)	필연적 형상 - 원칙
	<p>형상이 기능과 관련이 있으나, 선택 가능한 대체적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중점을 갖게 볼 수 없다.</p>
(3)	기분적. 기능적 형상 - 원칙
	<p>물품의 형상이 예컨대 건축물 형상의 양상을 갖어야 할 기분적. 기능적 형상의 경우, 이는 양인 중의 제인으로 특징이 특징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아 중점을 갖게</p>

본인이 한다. 따라서 기동권·가동권 행상이 표시하라는  
사실만으로 표시하라고 단정 불가하다.

### II 설문(3)

1. 신상권 권리·권리 - 이차 제 2조

중상, 부실하게 등록된 학과 같은 저작인권을 소멸시  
키 위한 제2조

2. 신상권 권리·권리 - 이차 제 3조 1항

저작인은 창작자 개개인 바, 공표 저작이라 동일. 표시  
저작인은 등록이 불가하다.

3. 신상권 기타 권속

(1) 불공정 표시 권속

이 식기 등 저작인은 '인식을 저장용 밀폐용기' 기, 신  
행 저작인은 '식품 수납 케이스'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  
품이다.

(2) 저작인의 표시 권속

1) 중상권 확정

상 저작인은 4각형의 등기 부호 문헌에 2개의 중  
중기가 형성된 기, 등기 부호의 4변에 중기 날개가  
각 형성된 기, 각 2각형 중기 부호에 형성된 기이  
서 중상권이다.

2) 차이점 확정





(2) 부속이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속 이격, 반복 생산성이나 근반가능성이 있다면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부속이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나 달리, 현장에서 신중하게 도저히 경학되는 것, 즉 근반이 불가능한 것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형상의 동일성 - 주

형상은 주재나 합금 재질로 하고, 색이나 표면 '색' 하며, 다형성은 바깥으로 '작은' 구성하여 내부공간이 양시간 일정 으로 구분되는 바, 형상 상성이 있어 부속으로 볼 수 있다.

5. 방향을의 동일성 - 주

방향성은 목적-형 등을 대별로 하고, 다양한 양으로 사 용될 수 있으며 '기능'이 가능한 바, 반복 생산성이나 근반 가능성이 있어 부속이다.

45  
1.2 부속(2)

1. 인테리어의 차이

인테리어란, 실내 내부의 공간이나 내부에 포함하는 물 품이 포함하여 구분 공간을 구 별한다.

2. 인테리어 차이가 있는 대상이다

(1) 다 차인 형 상 차이 충 분 명 백



다각적인 붐의 형성·양산·확대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붐의 형성·양산·확대를 일컫는 것이며, 다각적인 붐  
 형성 관련 구체적인 규제 방안의 타, 현행법상 인텔리야  
 다각적인 붐의 양산

(2) 다각적인 붐

최근 경제 상황 내각 양산과 같이 수요가 증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각적인 붐의 양산에 인텔리야  
 양산시켜 보는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3. 다각적인 붐의 양산

(1) 다각적인 붐

인텔리야 양산에 대한 대상은 아니지만, 실내에 배치  
 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양산 받아 볼 수 있다.

(2) 한 번의 붐 다각적인 붐

각 인텔리야를 이루는 물품들이 동시에 양산이 되고 동  
 일한 양산을 양산하는 것은 한 번의 붐 다각적  
 인 양산이 가능하다.

(3) 다각적인 붐

만약 실내 양산 중 일부분에 특성이 있는 경우라면, 다  
 각적인 붐을 양산할 수 있다.

<아하네스>